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. 11. 27 선고 2020가단124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11. 13

판결 선고 2020. 11. 27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7. 7.22. 접수 제97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는 1997. 7. 22. D, C, E가 각 1/3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,500만 원,채무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를 마쳤다.

나.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13545호로 C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. 1. 16.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1,727,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의 1내지 3, 제3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97. 7. 22.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. 7. 22. 소멸시효 완성으 로 소멸하였다.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 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김지현

별지